

의안번호	제 91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1월 2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<분장사무 조정>

- 분장사무 신설
  - 기획관리실 :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  - 신성장산업국 :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사항
  - 환경산림국 : 기후대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
  - 농업기술원 : 병해충대응에 관한 사항
  - 산림환경연구소 : 산림바이오센터에 관한 사항
- 분장사무 이관 : 행정국 → 경제통상국
  -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

### <자율신설기구 기간연장>

- 신성장산업국 :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2023년 12월 31일까지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8호 중 “세입지도, 세무지도”를 “세입관리, 세무조사, 체납관리, 과표운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6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 에 관한 사항
12. 사회적경제 총괄·기획·조정 에 관한 사항

제9조의2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이차전지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제1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”을 “기후변화대책”으로 한다.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4.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
제2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농작물 기상재해·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  
제39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3.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

제63조제1항 중 ““자치경찰법””을 ““경찰법””으로, “자치경찰법 제24조”를  
“경찰법 제24조”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조 중  
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  
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  
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지방세, <u>세입지도, 세무지도,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4. (생 략)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세입관리, 세무조사, 체납관리, 과표운영</u>----- --</p> <p>9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5. (생 략)</p> <p>16. <u>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행정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9조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1. · 12.</u> (생 략)</p>	<p>제9조(경제통상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<u>12. 사회적경제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<u>13. · 14.</u> (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)</p>
<p>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	<p>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9. ~ 11. (생 략)

제13조의2(환경산림국) 환경산림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 략)

<신 설>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 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~ 10. (생 략)

제24조(소관사무) 기술원장은 다 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5. (생 략)

6.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

7. ~ 13. (생 략)

9. 이차전지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10. ~ 12. (현행 제9호부터 제1 1호까지와 같음)

제13조의2(환경산림국) 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
3. 기후변화대책 -----  
--

4.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5.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 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7. ~ 14. (현행 제3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)

제24조(소관사무) 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농작물 기상재해·농작물 병 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

7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소관사무) 산림환경연구소  
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12. (생략)

<신설>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 
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 
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  
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9조(소관사무) -----  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“경찰  
법”-----  
-- 경찰법 제24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 
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 
----- 20  
23년 12월 31일-----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시·도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④ ~ ⑤ (생략)